

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12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년차적 현실화로 기채상환 및 시설투자사업비 등 부족 재원을 확충하며, 공기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요금수준에서 업종별 평균 15.1% 인상 (안 별표1)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「하수도법」 제65조(사용료 등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(요금) 및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2조의2 (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), 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
-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(행정자치부 예규 180호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례)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요율은 2008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1】

하수도 사용 요금표 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비 고
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210	
	21 ~ 30 m ³ (2단계)	310	
	31 m ³ 이상 (3단계)	450	
일반용	0 ~ 100 m ³ (1단계)	350	
	101 ~ 300 m ³ (2단계)	440	
	301 ~ 1,000 m ³ (3단계)	530	
	1,001 ~ 2,000 m ³ (4단계)	640	
	2,001 m ³ 이상 (5단계)	750	
욕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600	
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710	
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820	
	2,001 m ³ 이상 (4단계)	950	
산업용	m ³ 당	290	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1] 하수도 사용 요금표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(단위: 원)			[별표1] 하수도 사용 요금표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(단위: 원)		
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
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150	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210
	21 ~ 30 m ³ (2단계)	200		21 ~ 30 m ³ (2단계)	310
	31 m ³ 이상 (3단계)	450		31 m ³ 이상 (3단계)	450
일반용	0 ~ 100 m ³ (1단계)	280	일반용	0 ~ 100 m ³ (1단계)	350
	101 ~ 300 m ³ (2단계)	350		101 ~ 300 m ³ (2단계)	440
	301 ~ 1,000 m ³ (3단계)	430		301 ~ 1,000 m ³ (3단계)	530
	1,001 ~ 2,000 m ³ (4단계)	550		1,001 ~ 2,000 m ³ (4단계)	640
	2,001 m ³ 이상 (5단계)	650		2,001 m ³ 이상 (5단계)	750
옥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590	옥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600
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690	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710
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800	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820
	2,001 m ³ 이상 (4단계)	920		2,001 m ³ 이상 (4단계)	950
산업용	m ³ 당	270	산업용	m ³ 당	290

참 고 자 료

□ 지방자치법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제140조 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.

□ 하수도법

제65조 (사용료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22조 (요금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, 지역간 요금수준의

형평을 기하여야 하며,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2조의2 (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)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수도사업
2. 공업용수도사업
3. 하수도사업

제18조 (요금의 산정방식)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 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(행정자치부 예규 제180호, 2005.12.27)

- 근 거 : 지방공기업법 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